

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(신·구조문대비표)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“월별납부업체”란 「관세법시행령」 제1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하여 말일까지 납부(이하 “월별납부”라 한다.)를 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사업자를 말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관세법」 제9조제3항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 <p>2. ----- 「관세법 시행령」 제1조의5제1항 ----- ----- ----- 한다 ----- -----.</p> <p>3.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조문 정비</p>

④ (생략)

제5조(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)

① 월별납부업체는 대표자·주소·상호·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월별납부업체는 사업의 분할·분할합병이 이루어진 때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변경신고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월별납부업체의 권리·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월별납부업체를 인수·합병하는 업체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.

④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

4. (현행 제4항과 같음)

제5조(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)

① -----

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-----관할지 세관장(관할지 세관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이전 또는 이후 관할지 세관장 중 선택할 수 있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-----
----- 별지 제4호의2서식-----
-----.

③ -----

----- 인수·합병하는 업체의 관할지 -----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업
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 변경신고 세관 확대
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
- 조문 정비

- 조문 정비

다른 월별납부업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
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월별납부업체
승인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
하고,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또는
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신고수리서를 교
부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제6조(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) ① 관
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승인 유효
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
취소하여야 한다.

1. 제3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자격을 상
실한 경우
2. ~ 3. (생략)

② 관할지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월별납
부업체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
제5호 서식으로 그 사실을 해당업체에 즉
시 통보하여야 한다.

체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관할지
세관장은 변경신고 내용이 -----

----- 별지 제4호서식 ----
제4호의2서식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) ① --

-----.

1. 제3조제2항-----

2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별지
제5호서식-----
-----.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③ 제1항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취소한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가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납세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월별납부서가 이미 작성된 경우는 제외한다.

④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월별납부업체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경고 처분할 수 있다.

1. · 2. (생략)

제9조(담보제공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은 별표1의 방법에 의하여 설정한다. 다만, 관할지 세관장은 해당 업체의 수출입 실적 및 납세실적 등의 증가로 최근 실적에 의하여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한

③ -----

-- 별지 제6호서식-----

-----.

④ -----

-- 별지 제7호서식----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담보제공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 별표 1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(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월)부터 이전 1년간 제세의 납부실적 등을 기초로 월별납부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다.

③ ~ ④ (생략)

⑤ 관세청장은 관세체납의 증감, 세수의 추이 및 그 밖의 사항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월별납부한도액의 설정 또는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(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) ① 월별납부업체가 계절적인 요인 등 납세실적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월별납부한도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월별납부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신규지정 및 기간 갱신을 승인하는

----- 각종 세금 -----
-----.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 고려하여 -----
----- 별표 1 -----
-----.

제10조(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) ① -----

-----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을 신청 -----.

-----.

○ 별지(제2호) 서식 신설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최근 3월{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(전산시스템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전전월)부터 이전 3월}동안 또는 전년도 어느 분기 동안의 납세실적 등에 4를 곱한 금액을 적용하여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조정

2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업체가 신규 시설투자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으로 는 원활한 시설재 건설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,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월별납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

-----.

1. -----

----- 분기(전년도 실적이 천재지변 등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해당 사유발생 직전년도 어느 분기) ----- 별표 1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별표 2 -----

○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기준년도 확대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을 설정할 수 있다.

④ ~ ⑤ (생략)

제11조(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월별납부한도액을 신청 받은 관할지 세관장은 월별납부한도액 잔액의 범위에서 해당 수입신고를 수리 하며, 그 사용액 만큼을 월별납부한도액 에서 차감한다. 다만, 제세가 납부된 경우 그 납부금액 만큼 월별납부한도액 잔액 에 가산한다.

제13조(납세신고 세액의 정정) ① (생략)

② 관할지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4항 에 따라 월별납부대상으로 납세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족이 있는 것을 안 경우 에는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5조(월별납부서 작성시기 등) ① 월별납

-----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관리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신청 받은 -----
----- 사용액만큼 -----
----- 각종 세금이 -----
-----.

제13조(납세신고 세액의 정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제38조의3제6항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월별납부서 작성시기 등) ① 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부업체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납세신고 수리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전산시스템에서 일괄하여 부여한 납부서 번호 및 세액을 기재한 월별납부서를 작성한다.

1. 당월의 말일이 31일인 경우 : 당월 17일
2. 당월의 말일이 30일인 경우: 당월 16일
3. 당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: 당월 15일
4. 당월의 말일이 28일인 경우: 당월 14일

② (생략)

제16조(경정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경정을 한 세관장은 추가징수할 세액(「관세법」 제42조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15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.

제18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

-----.

1. ----- 경우: 당월 -----
2. ----- 경우: 당월 -----
3. ----- 경우: 당월 -----
4. ----- 경우: 당월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경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「관세법」 제42조 -----

----- 별지 제11호서식 -----
-----.

제18조(재검토기한) 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재검토기한 재설정

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----- 2022년 7월 1일 -----
----- 매 3년 -----

및 띄어쓰기 오류
수정